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80
----------	------

발의연월일 : 2020. 12. 29.

발 의 자 : 강득구 · 박성준 · 서영교
송재호 · 강민정 · 양경숙
홍성국 · 윤관석 · 노응래
김민석 · 임종성 · 이성만
황운하 · 서영석 · 김승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게 되어있음.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7제1항·제2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기적으로”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

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각각 “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신 설>

<신 설>

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

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

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

해야 한다.

② -----

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